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문화기술 정의 신설 및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설립·운영 근거 마련 〉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437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문화기술 정의 신설 및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설립·운영 근거 마련 (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31조의3 신설)	3
2. 부칙: 설립준비, 경과조치 등 신설 필요성	16
※ [참고1] 유사 입법례(안 제2조 ‘문화기술’ 관련)	17
[참고2] 유사 입법례(안 제31조의3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관련) ...	18
[참고 3]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현황	1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계원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6. 23.

다.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콘텐츠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보고 기술 혁신, 인공지능 활용,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콘텐츠산업의 매출과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문화기술은 문화상품 및 문화콘텐츠의 기획, 개발, 제작, 유통, 이용, 보존, 복원, 사업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반요소이자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요소로서, 국가전략산업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문화기술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제2조제16호에서 가치평가의 설명 과정에서 이를 “문화상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기법이나 기술”로 부수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문화기술의 정책대상성과 전략적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문화기술에 대한 법적 개념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문화기술 전담기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실정임.

또한, 문화기술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통해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문화기술 육성 근거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도 문화기술 전담기관의 설립과 기능 고도화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기술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문화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기술을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31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문화기술 정의 신설 및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설립·운영 근거 마련(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31조의3 신설)

개정안은 ‘문화기술’의 개념을 정의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문화기술의 혁신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문화기술”이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재화·서비스·콘텐츠의 기획·창작·제작·가공·유통·이용·보존·복원·사업화 또는 이와 관련된 경험의 제공에 활용되는 기법, 장치, 시스템, 소프트웨어, 데이터 활용기술 및 그 융합기술을 말한다.</u>
3. ~ 15. (생략) 16. “가치평가”란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문화상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기법이나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	3. ~ 15. (현행과 같음) 16. ----- 문화기술----- ----- ----- ----- -----.

현행	개정안
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17 ~ 21. (생략) 법률 제21590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u><신설></u>	17. ~ 21.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590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u>제31조의3(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문화기술의 혁신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u> <u>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u> <u>③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u> <u>1. 연구개발사업의 수요조사·기획·공고·선정·협약·점검·평가·정산·성과관리</u> <u>2. 문화기술의 연구 및 기술개발의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연구지원</u> <u>3. 문화기술 분야의 표준화·실증·사업화 및 기술이전 지원</u> <u>4. 문화기술 관련 통계·조사·분석 및 정책연구</u> <u>5. 문화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및 단체 등의 기술지원</u> <u>6. 문화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내외 산학연 공동연구·기술</u>

현행	개정안
	<u>제휴</u> 7. <u>문화기술의 개발·보급과 국제협력 및 교류</u> 8. 그 밖에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④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u> ⑤ <u>평가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현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현행법”이라 함)¹⁾은 ‘문화기술’에 대하여 독립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제2조제16호에서 ‘가치평가’ 정의 규정 본문에 언급된 ‘문화기술’ 용어와 관련하여 괄호로 “문화상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기법이나 기술”로 규정하고 있음.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가치평가”란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문화상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기법이나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① 정부는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⑥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정관」

제5조(부설기관) 진흥원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리·비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또한, 현행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 부설기관인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콘텐츠·저작권·스포츠·관광 분야 연구개발(R&D)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표]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수행 연구개발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분야	사업명	‘25년	‘26년	증감액	증감률(%)
콘텐츠	문화기술연구개발	60,020	83,200	23,180	38.6%
	글로벌가상공연핵심기술개발(종료)	1,280	-	순감	△100%
	K-Culture글로벌스타트업육성기술개발	1,967	9,275	7,308	371.5%
	인공지능기반공연예술안전환경구축핵심기술개발	4,864	6,400	1,536	31.6%
	문화기술 전문인력양성사업	7,044	6,900	△144	△2.0%
	문화공간 AX 전환을 위한 차세대 Culture Tech 기술개발(신규)	-	5,200	순증	100%
	문화예술 온톨로지 기반 LLM 연계 기술개발(신규)	-	1,750	순증	100%
	CT기반조성	4,150	3,450	△700	△16.9%
	문화체육관광R&D기획평가관리사업	5,056	3,941	△1,115	△22.1%
	소계	84,381	120,116	35,735	42.3%
저작권	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	2,532	1,124	△1,408	△55.6%
	선도형저작권기술개발	5,924	5,000	△924	△15.6%
	글로벌저작권현안신속대응	10,467	14,198	3,731	35.6%
	소계	18,923	20,322	1,399	7.4%
스포츠	종목별경기력향상지원	800	800	전년동	전년동
	개인운동기록 활용 기술개발(신규)	-	5,725	순증	100%
	소계	800	6,525	5,725	715.6%
관광	관광서비스혁신성장연구개발(종료)	1,160	-	순감	100%
	AI 기반 관광 혁신 기술개발(신규)	-	3,750	순증	100%
	소계	1,160	3,750	2,590	223.3%
합계		105,264	150,713	45,449	43.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런데 현행법상 문화기술은 문화상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기술 등으로 규정되어 문화상품의 제작뿐만 아니라 기획·보존·복원·사업화 등의 사업 범위를 포괄하지 못하고, 진흥원은 콘텐츠 제작 지원을 중심으로 업무가 이루어져 R&D에 대한 업무 집중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문화기술을 독립된 호에서 보다 포괄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현행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을 R&D 사업 전문기관으로서 독립 법인화하려는 것으로, 변화하는 문화산업 환경을 반영하고, 독립 법인화된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함)을 통해 문화체육관광 분야 R&D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특히, 평가원은 인력이 24명으로 총사업비 규모가 비슷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인력 98명에 비해 부족하고, 1인당 관리사업 수도 0.5개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0.15개 대비 많아, 문화기술 관련 R&D 전담 인력 보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진흥원 부설기관 체계로 운영되어 R&D 인력 증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함²⁾.

2) 전문성 활용을 위해 외부전문 인력인 PD(Project Director), PS((Project Specialist) 등에 대한 보수체계 이견 등으로 PD보수는 2009년 이래 동일 금액이 유지되고 있으며, PS는 낮은 보수로 3차례 연속 공고에도 지원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임.

[표] 타 연구관리 전문기관과의 비교(2024년)

구 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부)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문체부)	비고 (농림부 대비)
‘24년 예산	150,193백만원	99,241백만원	0.7배
관리인력 규모	98명	24명	0.3배
1인당 관리예산	1,533백만원	4,135백만원	2.6배
1인당 관리사업 수	0.15개	0.50개	3.3배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5년 연구관리전문기관 실태조사」 재가공)

다만, 개정안 심사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먼저 문화기술 정의 신설에 관하여, 개정안은 문화기술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재화·서비스·콘텐츠의 기획·창작·제작·가공·유통·이용·보존·복원·사업화 또는 이와 관련된 경험의 제공에 활용되는 기법, 장치, 시스템, 소프트웨어, 데이터 활용기술 및 그 융합기술”로 정의하고 있음.

[표]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문화기술’ 정의 비교

현행법	개정안
문화상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기법이나 기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재화·서비스·콘텐츠의 기획·창작·제작·가공·유통·이용·보존·복원·사업화 또는 이와 관련된 경험의 제공에 활용되는 기법, 장치, 시스템, 소프트웨어, 데이터 활용기술 및 그 융합기술

개정안은 문화기술의 적용 범위를 ‘제작’ 단계에서 기획·창작·가공·유통·이용·보존·복원·사업화 또는 이와 관련된 경험 제공 단계로 확장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산업의 범위를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서 영화·비디오물 관련 산업, 음악·게임 관련 산업, 출판·인쇄·정기간행물 관련 산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즉 개정안은 문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으로, 체육 및 관광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법이 아님. 따라서 정의 규정에 체육·관광을 직접 나열하기보다는, 문화산업 및 이와 연계된 분야로 범위를 한정하거나, 문화적 요소(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을 의미함)³⁾가 내재된 재화·서비스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기법, 장치, 시스템, 소프트웨어, 데이터 활용기술’은 ‘기술’이란 단어로 의미를 함축하여 서술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는바, 정의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문화상품”이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내재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규정의 간결성과 직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종합한 수정의견은 다음과 같음.

[표] 수정의견

[illegible]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법상 문화기술 적용 범위를 고려하여 문화상품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획·창작·제작으로 활용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음 평가원 설립과 관련하여, 안 제31조의3제1항은 평가원의 설립 목적을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문화기술의 혁신성장의 효율적 지원”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17조제1항4)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을 ‘연구개발사업’으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법 체계적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분야’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⁵⁾.

또한, 개정안은 평가원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등기설립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공법인은 통상 [법률 시행 → 설립위원회 구성 → 정관 작성 및 장관 인가 → 등기]의 절차를 거치는데, 개정안은 직접적인 등기 규정이 부재함.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 법률 시행일에 법인이 성립하는지, 문체부장관의 정관 인가일에 성립하는지, 「민법」 제33조⁶⁾ 준용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날에 성립하는지에 대해 해석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등기 규정을 마련하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5) 한편, 평가원의 사업 범위와 관련하여, 안 제31조의3제1항제8호는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평가원이 연구개발사업과 문화기술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기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6) 「민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는 것이 혼선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과학기술기본법」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⁷⁾,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⁸⁾ 등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다도,

7)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조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획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획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6. (생략)

⑤ 기획평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평가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⑦ 기획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

2.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기획평가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기획평가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술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기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6. (생략)

④ 기술진흥원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지역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기술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기술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⑦ 기술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개정안에 따른 평가원을 설립한다면 복수의 기관이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연구개발사업을 위한 부설기관 설치 근거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봄.

나아가 문화체육관광부는 평가원이 아닌 자가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종합한 수정의견은 다음과 같음.

[표]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① ~ ⑤ (생략) ⑥ <u>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u>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3. (생략) <u>4. 문화체육관광부 소</u>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① ~ ⑤ (개정안과 같음) <u><삭 제></u> ⑦ ----- -----. 1. ~ 3. (개정안과 같음) <u><삭 제></u>

정을 준용한다.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u>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성과 확산 등</u> 5. ~ 18. (생략) ⑧ ~ ⑪ (생략) <신설>	제31조의3(한국문화기술 기획평가원의 설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u>문화체육관광 분야</u> <u>연구개발사업의 기획</u> <u>·평가·관리 및 문화</u> <u>기술의 혁신성장을 효</u> <u>율적으로 지원하기 위</u> <u>하여 한국문화기술기</u> <u>획평가원(이하 “평가</u> <u>원”이라 한다)을 설립</u> <u>한다.</u>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 요한 직원을 둔다. <신설> ③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u>연구개발사업의 수</u> <u>요조사·기획·공고</u> <u>·선정·협약·점검</u> <u>·평가·정산·성과</u> <u>관리</u> 2. <u>문화기술의 연구 및</u> <u>기술개발의 중장기</u> <u>전략 수립 및 연구지</u> <u>원</u> 3. <u>문화기술 분야의 표</u> <u>준화·실증·사업화</u>	5. ~ 18. (개정안과 같 음) ⑧ ~ ⑪ (개정안과 같 음) 제31조의3(한국문화기술 기획평가원의 설립) ① ----- -----<u>연구</u> <u>개발사업의</u>----- ----- ----- ----- ----- -----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u>평가원은 그 주된</u> <u>사무소가 있는 곳에서</u> <u>설립등기를 함으로써</u> <u>성립한다.</u> ④ ----- -----. 1. (개정안제3항제1호와 같음) 2. (개정안제3항제2호와 같음) 3. (개정안제3항제3호와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u>및 기술이전 지원</u> 4. <u>문화기술 관련 통계</u> <u>· 조사 · 분석 및 정책연구</u> 5. <u>문화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및 단체 등의 기술지원</u> 6. <u>문화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내외 산학연 공동연구</u> <u>· 기술제휴</u> 7. <u>문화기술의 개발 · 보급과 국제협력 및 교류</u> 8. <u>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④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u> ⑤ <u>평가원에 대하여 이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u><신 설></u>	4. (개정안제3항제4호와 같음) 5. (개정안제3항제5호와 같음) 6. (개정안제3항제6호와 같음) 7. (개정안제3항제7호와 같음) 8. ----- -----<u>문화기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u>----- ----- ⑤ (개정안 제4항과 같음) ⑥ (개정안 제5항과 같음) ⑦ <u>평가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2. 부칙: 설립준비, 경과조치 등 신설 필요성

평가원 설립 준비를 위한 부칙 마련을 통해 정관, 직원 승계 계획 등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위원회가 설립등기 및 사무 인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실무적인 준비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현재 평가원은 진흥원 부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⁹⁾ 독립 법인화할 경우 재산·권리·의무 및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79

9)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법률 제9619호, 2009. 4.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평가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평가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평가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평가원의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재산·권리·의무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 농림기술관리센터(이하 “농림기술관리센터”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리·의무 중 농림기술관리센터에 속한 권리·의무는 평가원이 그 설립등기일에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농림기술관리센터 소속 직원은 평가원의 설립등기일에 평가원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참고 1

유사 입법례 [안 제2조 ‘문화기술’ 관련]

법률명 (법률번호)	조문내용(조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기술”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의과학·치의학·한의학·의료공학 및 의료정보학 등에 관련되는 기술 나. 의약품·의료기기·식품·화장품·한약 등의 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되는 기술 다. 그 밖에 인체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되는 보건·의료 관련 기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器機)·기술·서비스 등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 또는 이를 응용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의 예방·저감·관리·처리·감시·측정 또는 분석에 관한 기술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술 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술 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 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순환에 관한 기술 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관리기술 사.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술 아.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 기술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농림식품과학 기술 육성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식품과학기술”이란 농산물과 식품의 품종개량, 재배, 사육, 채취, 운반, 가공, 상품 개발, 유통, 소비 등 생산 및 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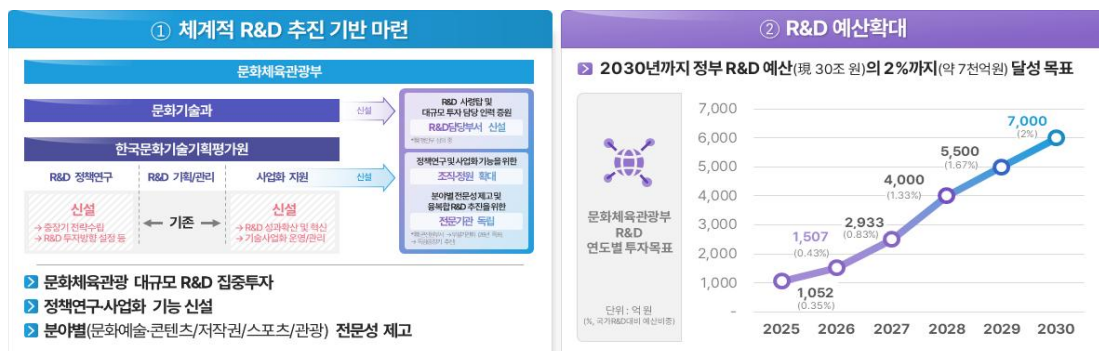
참고 2

유사 입법례 [안 제31조의3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관련]

법률명 (법률번호)	조문내용(조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 2.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사업) ②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획을 위한 산업기술의 수요·수준 및 전망에 관한 조사 2.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
과학기술 기본법	제20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조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④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하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대한 지원 2.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대한 지원 3.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등에 대한 지원 4. 과학기술예측 5. 제14조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농림식품과학 기술 육성법	제8조(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 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평가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지원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청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3.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업 지원 4. 제15조에 따른 기술역량진단 관련 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현황

- **(설립목적)**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문화체육관광 R&D 전주기(기획-R&D-사업화) 총괄 지원체계 마련
- **(기관유형)**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설기관 ('26. 4. 1. 출범)
 - 2003년, 문체부 R&D 시작 시 당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수행
 - 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기관 개편
 - 2021년, 1부처 1전문기관 방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출범
 -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R&D기능 이관
 -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본부 형태
 - 2026년, 재무인사 등 독립성을 지닌 부설기관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출범
- **(주요임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콘텐츠·저작권·스포츠·관광 분야 R&D를 총괄 지원하는 문체부 유일의 R&D 전담기관**
 - 문화체육관광 R&D 사업의 전주기(기획-평가-관리-성과확산) 수행
 - ‘30년까지 7,000억 목표로 문화 분야 전문성·집중도 있는 R&D 투자 확대 예정이며, 전략적 R&D를 통해 K-컬처 400조 달성 기여



- K-컬처 확산, 글로벌 문화강국 실현 등 대통령 핵심과제 이행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행기관으로서, 문화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기술혁신 기반 조성에 중추적 역할 담당

- (조직/인력) 2본부5팀/ 현 정원 29명(일반직 25명 공무원 4명) *일반계약직 4명 별도

본부(2)	경영전략본부, 연구개발사업본부
팀(5)	전략혁신연구팀, 경영지원팀, 연구개발기술기획팀, 연구개발사업팀, 연구개발성과팀

- (관리예산) '26년 기준, 총 1,507억 원(전년 대비 43.2%↑)